

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. 7. 19 선고 2015가단4347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론 종결 2016. 7. 5.

판결 선고 2016. 7. 1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C 전 1283㎡ 중 별지 도면 표시 5, 16, 17, 18, 19, 6,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'가' 부분 철골블럭조 판넬지붕 건물 13㎡를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원고가 경주시 C 전 1283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의 소유자인 사실,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접한 경주시 D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는데 위 건물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, 16, 17, 18, 19, 6,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'가'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, 2, 3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'가' 부분 위에 위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위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, 원고에게 별지 도면 표시 '가' 부분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, 그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2. 결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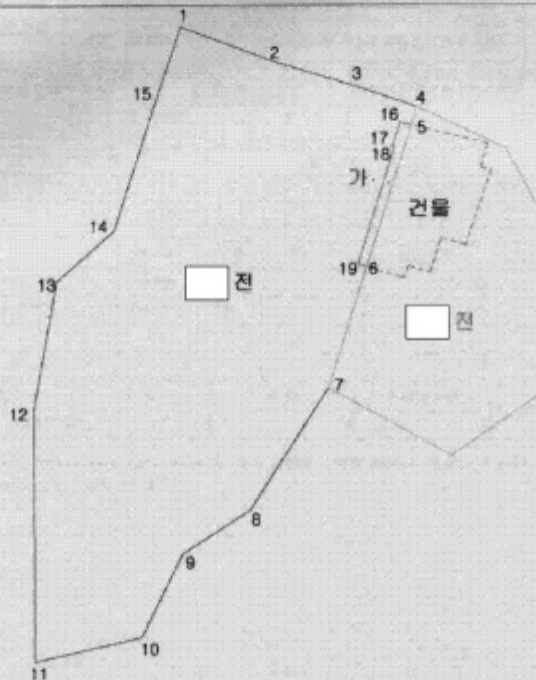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박은진

참 고 도

토지 소재

경주시

[illegible]